

의안번호	2209291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5.4.28.
추계번호	25B187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법률 제18028호 부칙 제2조 (유효기간)	○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법률 제18028호 부칙 제2조 (유효기간)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1¹⁾ 및 제58조의12²⁾의 유효기간

1) 제58조의11(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3.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공급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배치계획과 설치계획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58조의12(인·허가 등의 의제)

- ① 환경부장관이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지정·인가·협의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라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이 향후 5년간 추가로 면제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현행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사용료 등이 면제됨
 - － 최근 4년간(2021~2024년) 현행법 제58조의11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건수는 [표 1]과 같음
 - － 법 제58조의12제3항에 따라 면제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참고자료]와 같음

[표 1]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건수(2021~2024년)

(단위: 건)

연도	2021	2022	2023	2024	합계
승인건수	36	47	36	23	142

자료: 환경부

-
-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만 해당한다.
 5.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8.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9.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2.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②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다만, 인허가 등의 의제 시 면제되는 수수료 등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나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건수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시 면제 대상 수수료
현황

연번	구분	근거법	수수료 금액	
1	건축허가 등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연면적 200㎡ 이상 1천㎡ 미만	1만4천원 이상 2만원 이하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	3만4천원 이상 5만4천원 이하
2	고압가스제조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5	2만5천원	
3	개발행위허가	수수료 없음		
4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9	허가	2만원
			신고	5천원
5	농지전용허가	농지법 시행령 제74조	농지전용허가 등	2만원 + α (3,500㎡ 초과 시 초과면적 350㎡마다 2천원 가산)
			농지전용의 신고	5천원
6	도로공사시행허가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	허가 시 공사비의 1천분의 1 1천원	
7	하천점용허가		수수료 없음	
8	배수설비설치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없음		
9	상수도공급신청	수수료 없음		
10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수수료 없음		
11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	4천원~1만원	
1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	4천원~9천원	
13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허가	1만원
			신고	5천원
14	도시공원 점용허가	수수료 없음		

자료: 환경부